

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

제출년월일 : 96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정

1. 의결주문 :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다음과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'96정기 저불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·선택하여
물품관리의 저정을 기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소모품 범위기준(별표1) 조침
 -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
소모, 파손되기 쉬운 물품 → -----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 -----
- 오자 정정
 -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 →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

4. 조례내용

- 붙임과 같음

5. 관계법령

-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제25조 및 [별표1]

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제2항중 "제12조의2"를 "제12조"로 한다.

[별표1] 물품의 품종·상태 구분의 품종구분기준 제2의 소모품 제4항중 "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"을 "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분 대비표

인	행	개	정	인
구미시유품관리조례중				
제25조(유품출납원의 징부) ② (생략)		제25조(유품출납원의 징부) ① 현행과 같음		
②분위유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문용카드, 도서대 성금 비치하여야 하며,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품에 대하여는 비품 출납 및 문용카드에 "징수불품"이란 구분인을 찍어야 한다.		② ----- ----- ----- <u>제12조</u> ----- ----- -----		
[별표1]		[별표1]		
금품의 출납·상대구분		금품의 출납·상대구분		
○ 금품의 종류 (생략)		○ 금품의 종류 현행과 같음		
○ 품종구분기준		○ 품종구분기준		
1)비품 — (생략)		1)비품 — 현행과 같음		
2)소모품 — ④ 내장연수가 1년이상 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, 파손되기 쉬운 물품		2)소모품 -- ④ ----- ----- <u>취득단가10만원 이하의 물품</u> ----- -----		